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

[광주지방법원 2011. 11. 25. 2011노2629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항 소 인】검사

【검사】정영수

【변호인】 변호사 서성일(국선)

【원심판결】광주지방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고정1659 판결

【주문】

1

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.

[이유]

11. 항소이유의 요지

-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61km 내지 약 57km의 속도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는바,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고, 피고인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

2. 판 단

가.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

피고인은 (차량번호 1 생략)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.

피고인은 2011. 5. 21. 02: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5가에 있는 광남4거리 교차로를 북동 방면에서 문화전당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.

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,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공소외 1(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)(여, 54세)이 운전하는 (차량번호 2 생략) SM5 자동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, 이로 인하여 위 자동차가 왼쪽으로 회전되면서 뒤 범퍼 왼쪽 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전하는 (차량번호 3 생략) 택시를 충돌하게 하였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통원 일수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, 피해자 공소외 3, 4, 2, 5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.

나. 원심의 판단

-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인정하고, 이를 종합하여 보면,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고, 피고인의 택시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,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.
- 1)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, 교통사고보고(1)(2) 및 교통사고현장사진, 각 택시영상기록장치녹화장면, 각 진단서, 통원사실확인서 등이 있고,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, 장소에서 자신의 진행방향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택시를 진행한 사실(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는 적색 등화의 뜻에 관하여 '차마는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.
- 다만,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다), 위 택시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는 순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에서 녹색 등화로 바뀌자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행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.
- 2) 그러나 다른 한편,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'신호위반 사고'라 함은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, 교통사고가 신호위반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.
- 이 사건에서 보건대,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, 즉 ① 피고인의 택시는 이 사건 교차로를 향하여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, 이 사건 교통사고 6초전인 02:27:11경 우회전 차로인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, 사고 3초 전인 02:27:14경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진행 방향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이른 점, ② 피고인의 택시가 이 사건 교통사고 2초 전인 02:27:15경 시속 약 57km의 속도로 위 횡단보도 위를 지나는 순간,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에서 녹색 등화로 바뀌었고, 그와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1 차량의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등 또한 황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로 바뀐 점(피고인 택시의 영상기록장치화면에 의하면 위 신호변경 시점에 피고인의 택시는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 약간 못 미친 지점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피고인 택시의 영상기록장치화면 시각보다 약 19초 빠르게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 공소외 2 택시의 영상기록장치화면에 의하면 그 순간 공소외 1의 차량은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채 자신의 진행방향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), ③ 일반적으로 황색 등화의 지속시간이약 3초임을 고려할 때, 공소외 1의 차량은 자신의 진행방향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바뀐 시점에는 정지선에 한참 못 미친 지점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이후 피고인 택시는 사고 1초 전인 02:27:16경 시속 약 51km의 속도로 감속되었다가, 사고 시각인 02:27:17경 시속 약 46km의 속도로 공소외 1 차량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앞서 본 부합증거들 및 인정사실들만으로는,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 또한 교차로에 신호위반으로 진입하기 직전이던 공소외 1의 차량을 세심히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,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,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위 법조 소정의 신호위반 사고, 즉 '신호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'에 해당한다고 할수는 없다.

3)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, 기록에 편철된 공제계약증명서(수사기록 95쪽)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가 위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,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위 피고 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.

다.

당심의 판단

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비록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는 하였지만,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이 사건 교통사고 2초 전에 적색 등화에서 녹색 등화로 바뀌었고, 그 순간 피고인 차량은 횡단보도 상에,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은 정지선에 미치지 못한 지점에 있었으므로,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후 바뀐 신호인 녹색 등화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에 공소외 1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,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.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강회(재판장) 서인덕 김민지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